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94 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이병진·남인순·김영환

한정애 • 민병덕 • 이상식

소병훈 · 오기형 · 허성무

권향엽・김 윤・문금주

오세희 • 문대림 • 양부남

이용우 · 임미애 · 김문수

김동아 · 이재관 · 서삼석

강준현 의원(2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,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장과 통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현재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되고 있는데,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, 주민자치회의

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삭제하고,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"자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  - 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
  -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  -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장제4절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4조의2(이장 및 통장)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  - ② 이장 및 통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주민의 신 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 또는 동장이 임명한다.
  - ③ 읍장·면장 또는 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설 치·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자 치회로 본다.

- 제3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한 이장 및 통장은 제1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장 및 이장으로 본다.
-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를 삭제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7조의2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을 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"자치회"라 한다)를 둘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수 있다. ②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및 발전을 위한 사항 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사항 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위탁한 사항
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(5)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(6)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 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4조의2(이장 및 통장) ① 행 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행 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이장 및 통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

<신 설>

또는 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 또는 동장이 제 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